

분류기호 문서번호		법무01210-1380 (전화: 731-6151)	기 안 용 지 시 행 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 장 2.41 <i>2.41</i>	
수신처 보존기간	영 구		
시행일자	1989.11.	1989.11.10 <i>1989.11.10</i>	
보 조 기 판	부 장 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	협 조 기 판	문 서 총 장 1989.12.01 <i>1989.12.01</i>
기안책임자	김 기 농	시정연구관 시정기획담당관 조직관리계장	발 신 명 의 주무과는 총 1989.12.1 <i>1989.12.1</i>
경 유 수 신 참 조	각 안 참 조		
제 목	서울특별시경찰국제101경비단 및 제22특별경호대 사무분장규정 제정 공포 (문령) 훈령 제 689 호		
(제 1 앤) "내부결재"			
1. 서울특별시 규칙제2303호 ('89.11.3)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차 무분장규칙 제85조 및 제90조에의거 서울특별시 경찰국제101경비단 및 제22특 별경호대 사무분장규정을 별첨과 같이 제정 하였으나			
첨 부 서울특별시 경찰국제101경비단 및 제22특별경호대 사무분장규정			
(문령) 1부 끝.			
(제 2 앤)			
수 신 수신처 참조		3405	
1505-25(2-1)월(1)장 85. 9. 9. 등일		190mm x 260mm 인쇄물지 2-1 66g/m ² "내가야긴 종이 한장 들어나는 나라살림" 가 40-41 1988. 8. 31.	

제 목 갈 은 건

1. 서울특별시규칙제2303호 ('89.11.3)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 제85조 및 제90조에의거 서울특별시 경찰국 제101경비단 및 제22특별경호대 사무분장규정
별경호대 사무분장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통보아니 시행에 차질없도록 할것
(업무에 참고하기 바람)

첨 부 서울특별시 경찰국제101경비단 및 제22특별경호대 사무분장규정
(문령)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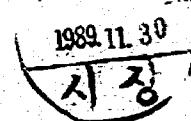
주신처 시정개발담당관, 지경찰국

서울특별시 경찰국제101경비단민제22특별경호대 사무 규정
분장

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

19 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고 전 인



3407

서울특별시훈령 제 689 호

서울특별시경찰국 제101경비단 및 제22특별경호대사무분장규정제정

서울특별시경찰국 제101경비단 및 제22특별경호대사무분장규정은
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제85조, 제90조의
규정에 따라 대외비 사항인 서울특별시경찰국 제101경비단 및
제22특별경호대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제101경비단) ① 제101경비단에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
부단장1인과 경무과, 교육과, 경비과, 보급과, 안내과 및 중대를
두고, 부단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각과장 및 중대장은 경정 또는
경감으로 보한다.

②과 및 중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경무과

- 가. 복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
- 나. 복지 및 후생에 관한 사항
- 다. 문서관리 및 관인관수
- 라. 상훈 및 감찰
- 마. 보안업무

11.30
장

2. 교육과

가.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

나. 직장훈련에 관한 업무

3. 경비과

가. 경호경비에 관한 업무

나. 작전 및 통신에 관한 업무

다. 경비시설물 관리유지

라. 무기 및 탄약관리

4. 보급과

가.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
나. 퍼복류 지급 및 관리

다. 청사시설 관리

라. 장비 및 차량관리

5. 안내과

가. 인원, 차량의 검색, 출입안내 및 출입증 관리

나. 면회실 운영

6. 중대

가. 경호경비 근무

나. 기타 단장이 지정하는 업무

2004.11.30
시장

제3조(제22특별경호대) ① 제22특별경호대에 대장을 브좌하기 위하여
부대장 1인과 경무과, 작전교육과 및 제대를 두고, 부대장은 경정
으로, 각과장 및 제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.

②과 및 제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경무과

- 가. 복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
- 나. 경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
- 다. 장비 및 차량관리
- 마. 특지 및 후생에 관한 사항
- 바. 문서관리 및 관인관수
- 빠. 보안업무

2. 작전교육과

- 가. 경호경비에 관한 업무
- 나.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
- 다. 작전 및 통신에 관한 업무

3. 제대

- 가. 경호경비 근무
- 나. 기타 대장이 지정하는 업무

시장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